

##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사유 공시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,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**선임근거:** 2020년 1차 임시이사회 의결 (2020. 3. 13.)

### 2. 선임내용

구분	성명	직위	선임일자
이사회 의장	찬 웅 성(재키 찬)	비상임이사	2020. 3. 13.
선임사외이사	이봉주	사외이사	2020. 3. 13.

### 3. 선임사유

이사회 진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안건, 운영 등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은 찬 웅 성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사들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.